온양문화원 신입회원 모집안에



우 양문화원 회원이 되면?

첫번째: 분기간 아산타이딩(소식지) 정기간행물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.

두번째: 각종 문화행사와 교육에 우선적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.

세번째: 문화학교 및 문화유적 탐방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
온 양문화원 회원이 되는 자격 및 참여방법

온양문화원의 설립목적과 활동사업에 뜻을 같이하는 사람은 누구나 회원으로 참여 할 수 있습니다.

전화 또는 직접 문화원에 내방하셔서 회원 가입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면 됩니다.

- 회원회비: 년 회비 20.000원(지로나 계좌송금도 가능)
- ●납입계좌: 농협 483012-51-051421 온양문화원
- ●문의전화: 041)545-2222, 548-8488
- ※ 온양문화원은 공익을 위한 특수법인 단체이므로 납부하신 회비는 연말 정산 시 비용인정 및 세금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으며, 개인은 물론 뜻있는 기업 단체 등에서 발전기금을 내고자 할 때 손비처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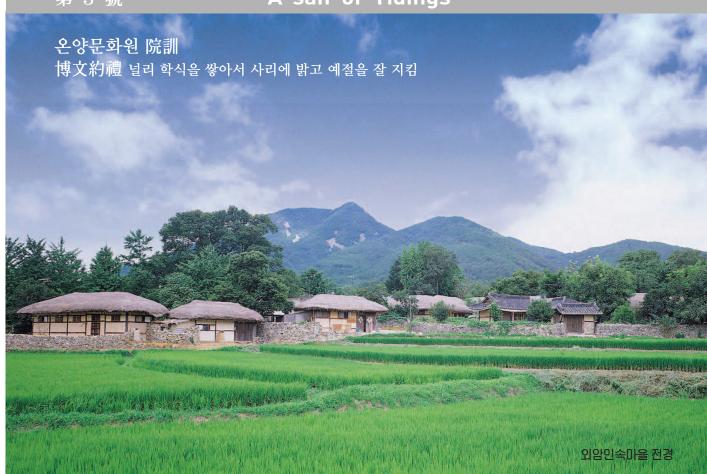


"문화재의 보고·자랑스런 우리고장"

아산타이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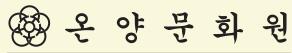
第 3 號

A-san of Tidings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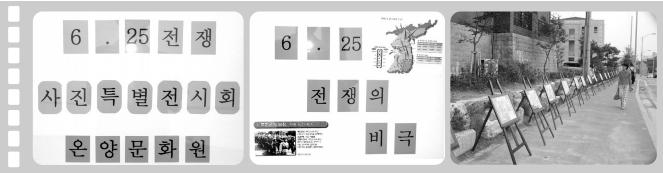


■ 문화원이 하는 일

- 1. 지역고유문화의 계발 · 보급 · 보존 · 전승 및 선양
- 2. 향토사의 조사 · 연구 및 사료의 수집 및 보존
- 3. 지역문화행사의 개최
- 4.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 · 보존 및 보급
- 5. 지역전통문화의 국내 · 외 교류
- 6. 지역문화에 대한 사회교육활동
- 7.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
- 8. 기타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



우 336-012 충남 아산시 온천2동 206-24번지 TEL:(041)545-2222 FAX:(041)542-4444 홈페이지:www.cult21.or.kr E-mail:Onyangcc2@hanmail.net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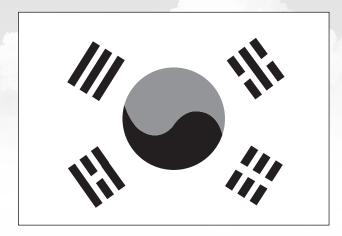
1950년 6월 25일 새벽 북한 인민군이 북위 38 °선 이남으로 무력 침공함으로써 남한과 북한 간에 발생한 전쟁으로 남북한은 항구적인 평화가 아닌 휴전상태에서 오늘에 이르고 있는데 그 심각성은 희미해져 가는 것 같아 경각심을 일깨우는 차원에서 2007년 6월 25일 온양문화원에서는 6.25전쟁의 비극을 다시금 마음깊이 되새겨 다시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진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다. 오가는 시민들께서 그날의 비극을 간접체험 할 수 있어 교육적 가치는 매우 컸고, 북한을 적이 아닌 한민족으로 인식하고, 평화통일되기를 간절히 염원하였다.



${f C}$ ontents

2	목차
3	취임 1주년 온양문화원장 한 말씀
4-7	제 46회 아산 성웅 이순신 축제
8	문화탐방
9	김은숙 부원장 기고
10	김환주 이사 기고
11	아산이 낳은 과학자 장영실
12	갓쓴바위의 전설
13	통합축제 홍보
14-15	문화학교 운영
16	생활의 지혜
17	아산시 간추린 뉴스
18	인사동향
19	국기 게양법
20	신입회원 모집안내

국기게양법



가. 게양일

국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날은 다음과 같고 다른 날에도 국기를 게양할 수 있다.

- 1. 국경일
- 2. 1월 1일
- 3. 국군의 날
- 4. 한글날
- 5. 현충일(조기 개양)
- 6. 국장기간(조기 게양)
- 7. 국민장일(조기 게양)
- 8. 정부가 따로 지정하는 날 9. 지방자치단체가 조례 또는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 는 경사스러운 날(당해 지방자치단체에 한한다)

나. 게양시간

96년부터는 국민들이 국기를 가까이 하도록 하기 위해 국기를 24시간 게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.

야간에 게앙할 경우 되도록 적절한 조명을 하여야 하며 심한 비, 바람 등으로 훼손되거나 존엄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경우가 아니면 계속 게앙할 수 있다.

학교 및 군부대의 주된 게양대는 국기를 낮에만 게양하며 낮에만 게양하는 경우 게양 및 강하시각은 다음과 같다.

- 1. 게양시각 : 오전 7시
- 2. 강하시각 : 3월부터 10월까지 오후 6시,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오후 5시

야간행사 등에 있어서 국기를 게양할 필요가 있는 경 우, 국장 및 국민장등 조기를 게양하여야 하는 경우, 기 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총무처 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경우에는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각을 변경할 수 있다.

다. 게양장소

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단체의 청사와 각급 학교에는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하고, 다음의 장소에는 되도록 연중 국기를 게양하여야 한다.

- 1. 공항 · 호텔 등 국제적인 교류장소
- 2. 대형건물 · 공원 등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곳
- 3. 주요 정부청사의 울타리
- 4. 기타 많은 게양대가 함께 설치된 곳

라. 외국기와 함께 달 때

- ① 외국기는 우리나라를 승인한 나라에 한하여 게양하여야 한다. 다만, 국제적 회의 또는 체육대회 등에 있어서는 우리나라를 승인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기를 게양할 수 있으나 미리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.
- ② 국기와 외국기는 가장 윗자리에 국기를 게양하고, 그다음 위치부터 외국기를 게양하며 국기와 외국기 는 그 크기 및 높이가 같도록 한다. 외국기의 게양 순 위는 외국국가 명칭의 알파벳 순서에 따르고, 국기 를 포함하여 게양하는 기가 짝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오른쪽으로 그 순서에 따라 외국기를 게양 하며, 홀수인 경우에는 국기를 마주보아 국기를 중 심으로 하여 가까운 왼쪽·오른쪽의 순으로 외국기 를 게양한다.
- ③ 국기와 외국기를 교차시켜 게양하여야 할 경우에는 밖에서 보아 국기의 깃면이 왼쪽에 오도록 하고, 그 깃대는 외국기의 깃대 앞쪽에 오도록 한다.

새롭게 바뀌는 국기에 대한 맹세

'국기에 대한 맹세' 문안이 수정문 시안이 정해져 오는 7월 27일 공포됩니다.

수정문은 기존문안과 비교하면 어법상 틀린 표현인 '자랑스런' → '자랑스러운' 으로 바꾸고, '몸과 마음을 바쳐'는 희생을 강요하는 의미를 연상시키므로 삭제됐다고 행정자치부는 설명했습니다.

〈국기에 대한 맹세〉나는 자랑스런 태극기 앞에 조국 과 민족이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 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집합니다. ☐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 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것을 굳게 다집합니다.